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10. 16.
4.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 신설로 정책연구 공개 대상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되었고, 동 조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2.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2. 적용 대상 연구의 범위(안 제3조)
3. 정책연구용역 공개 시기와 방법(안 제4조)
4. 비공개 대상 기준(안 제5조)
5. 평가와 활용 근거(안 제6조)

IV. 참고사항

1. 관련법규 : 【조례안 별첨 7】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안 별첨 2】

3. 협 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 9. 3. ~ 9. 23.)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조례안 별첨 3】

나. 교육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조례안 별첨 4】

라.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조례안 별첨 5】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조례안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0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¹⁾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²⁾
- 이와 관련하여서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는³⁾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1)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2) 국민권익위원회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제2018-365호)에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결과 공개의 소극적인 실태를 지적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한 공개기준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음.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연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의 ‘정책연구과제 자료실’ 등을 통해 공개하여 왔습니다.⁴⁾

[표1]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

구분	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www.serii.re.kr)	온나라 정책연구 (www.prism.or.kr)
본청 부서 발주 정책연구용역	○	×	×
연구정보원 발주 정책연구용역	○ 2019년 이후	○	×

그러나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교육청은 그동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진 않았는바, 교육청이 동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체계에 합치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지난 2017년 법령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지금에서야 이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해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앞으로 교육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5급 승진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144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음(2020.12. 7. 기준).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의 총칙 규정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비공개, 평가와 활용 및 시행규칙의 마련 등에 관한 본칙 규정의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4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기한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를⁵⁾ 단순 참고 인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는⁶⁾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를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2] 시·도 교육청별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규정

시·도 교육청(가나다순)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	공개시스템
강원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경기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등
경상남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

5)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6)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 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도 교육청(가나다순)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	공개시스템
		의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부산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인천광역시	규정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전라남도	규정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충청북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표2]와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개기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서울특별시의 공개기한을 따르기 보다는 교육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와 같이 공개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

○ 또한 동 조례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7)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의 '정책연구과제 자료실'의 활용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교육청 홈페이지의 기존 자료실 등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동 조례안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